	<u>.</u>	
		258 2010. 9. 6()
고 시		
2010-49		2
2010-50	가	3
2010-550		4

:			:	(309-	4071)

고 시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부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10-49호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신설도근점(2902번~2932번) 321점】

2010년 09 월 06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⑩

측량기준점 평		면직각종횡선수치		측량기준점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명칭및번호 X(r		n)	Y(m)	명칭및번호	X(m)	Y(m)			
2902	190792.92		200611.44	2918	191761.18	201436.84			
2903	19096	3.81	200823.35	2919	191740.43	201465.12			
2904	19094	5.40	200773.94	2920	191758.77	201485.33			
2905	19114	6.84	200901.83	2921	191817.91	201486.04			
2906	19128	8.97	200944.72	2922	191801.58	201591.27			
2907	191429.61		201146.62	2923	191874.14	201569.30			
2908	191653.32		201186.20	2924	191925.77	201554.62			
2909	191704.87		201310.07	2925	191963.74	201578.71			
2910	191743.68		201362.83	2926	191988.83	201533.66			
2911	191762.30		201327.79	2927	192027.13	201519.86			
2912	191785.53		201320.41	2928	192010.93	201449.81			
2913	191805.63		201321.66	2929	192007.56	201412.92			
2914	191837.69		201314.85	2930	191977.16	201411.58			
2915	191858.63		201356.50	2931	191937.27	201386.97			
2916	191834.74		201379.62	2932	191940.56	201291.79			
2917	17 191810.24		201398.02						
기 준 원 점 명		동	동 부 원 점						
소 재 지		화명	화명동 1152번지 일원(화명근린공원)						
측 량 년 월 일		2010.08.02							
측량성과보관장소		북구청 토지정보과 (☎ 309-4771)							
비 고									

고 시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0-50호

하천점용 허가사항 고시

2010년 9월 6일

부산광역시 북 구 청 장 엔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한 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38 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 하천의 명칭 : 낙동강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3. 주 소 : 부산 연제구 연산5동 부산광역시청 중앙로 2001(연산5동 1000번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하수관거 신설(확충) 공사[장림처리구역(대리천일원)]자재 및 토사 야적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덕천동 763번지 국가하천 낙동강

6. 점용면적: 760m²

7.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9. 1 ~ 2013. 6. 26. 끝.

공 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550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9. 06.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신고 수수료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자치구 사무이므로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 1건 10,000원 <신설>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 1건 5,000원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u>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7일까지</u>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환경위생과장, 부산광역시 북구 강변2길 6(구포동)]에게 제출

(FAX : 309-4389)하거니, 전화(051-309-4385)로 알려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붙임: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인) 1부. 끝.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16. 환경관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환경관계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1건	10,000원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